

『법조』誌 윤리지침

2009. 7.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조』誌 윤리규정에 표명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법조』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조』誌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 심사자, 편집위원에게 적용되며, 법조협회의 기타 간행물에 준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가설 및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본 협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다른 매체에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매체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타 매체에 동일 논문이 본 학술지에 출간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본 학술지 및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4.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심사종료 후 일정기간 이상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7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제8조(윤리규정·윤리지침의 준수) 『법조』誌에 원고를 투고한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는 본 학술지의 윤리규정 및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법조』誌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다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편집간사 또는 편집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및 윤리지침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조사결과서의 작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윤리규정 및 윤리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을 경우, 본 협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저자 등에 대하여 『법조』誌 윤리규정 제15조(위반시 제재)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1. 조사 방해, 제보자 위해 : 경고
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위반사항 공지 및 관련 기관 통보, 3년간 투고 금지
3.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 위반사항 공지 및 관련 기관 통보, 3년 이상 5년 미만의 투고 금지, 논문 목록 삭제, 이미 지급된 원고료의 환수

제14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협회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